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656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박홍배 · 윤준병 · 정태호

김재원 • 김태년 • 김현정

김우영 • 박정현 • 서미화

김민석 • 민병덕 • 이광희

이용우 · 박지원 · 이연희

강훈식 • 문진석 • 김한규

한준호 • 조승래 • 염태영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휴업수당, 연 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준임.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일부 사용자는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여 등의 비중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도 자행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남.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
	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
	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
	액을 말한다.
<u>7.</u> ~ <u>9.</u> (생 략)	<u>8.</u> ~ <u>10.</u> (현행 제7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u>하다.</u>